

## 경운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본 센터는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하여 경운대학교 내에 설치한다.

**제2조(목적)** 센터는 산업과학기술의 이론과 응용에 관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내용)**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중소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 수행
2.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센터 연구진이 기술지도
3. 기업체의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연구 수행
4.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연구장비 및 공간 제공
5.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교육 및 세미나 등을 센터에서 또는 현장에서 실시
6. 첨단기술정보 및 특허 관련 정보 제공
7. 첨단 기술정보 교류 및 연구방향과 방법 제고
8. 연구개발의 수시 점검 및 기타 산학협력 발전에 관한 사항 토의

### 제2장 조 직

**제4조(조직)** 센터에는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과제진도관리, 문헌출판 등 중소기업청 산학협력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행정을 관장하는 행정실을 둔다.

**제5조(임원)** 센터는 다음 같은 임원 등을 둘 수 있다.

1. 센터(소)장 : 1명
2. “삭제” <2015.03.01.>
2. 사무직원 : 약간명
3. 사무보조원 : 1명

**제6조(임원의 임명, 직무 및 임기)** ① 센터(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센터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임명)**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소)장이 되며 위원은 전임 센터(소)장, 대학 및 기업체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재가를 얻어 센터(소)장이 위촉한다.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운영계획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예산 및 결산
4.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
5. “삭제” <2015.03.01.>

**제11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장 재 정

**제12조(재정)** ① 센터의 재정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업체 분담금, 대학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에서의 사업비는 해당연도 중소기업청 산학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세부지침에 의한다.

③ 제3조의 사업을 위한 운영경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중소기업청 산학협력사업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4조(연구업무절차)** 해당연도 중소기업청 산학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세부지침에 의한다

### 제5장 사업비

**제15조(사업비 구분)**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한다.

1. 인건비
2. 직접비
3. 간접비
4. “삭제” <2015.03.01.>

제16조(사업비 신청 및 집행요령) ① 센터의 사업비 신청 및 집행은 해당연도 중소기업청 산학협력사업 운영요령, 세부지침 및 연구개발사업비 집행방법에 의한다.

② 위 ①항 이외의 연구개발사업 집행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6장 “삭제” <2015.03.01.>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